

대구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19가단1191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고 1. A

2. B

3. C

4.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화

변론 종결 2022. 2. 23.

판결 선고 2022. 4.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① 피고 A은 원고에게 17,190,667원 및 그 중 16,582,915원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7. 1.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17,190,66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17,190,6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A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8. 4. 3. 접수 제481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④ 피고 A과 피고 D 사이에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은 피고 A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8. 3. 12. 접수 제349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 A의 채권자이고, 피고 B, C, D은 피고 A의 형제 또는 남매로서 피고 A으로부터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증여받은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A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2013. 1. 18. 피고 A과 보증금액 1,700만 원, 보증기간 2013. 1. 18.부터 2014. 1. 17.까지(이후 2019. 1. 11.까지로 연장되었다), 보증방법 개별보증으로 정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의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과 위약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6조(사전구상)

① 피고 A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가 사정구상을 행사하기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고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때

2.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중략)

7. 사업장(임차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중략)

9. 이 약정에 의한 원고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원고가 신용보증부실사유발생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중략)

13. 위각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때

2)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이 된 신용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8조(개별보증에서의 보증책임)

보증방법이 개별보증인 경우 원고의 보증책임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 원고는 보증기한 이내에 신용보증부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보증기한 경과 후에 신용보증부실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후략)

제12조(신용보증부실사유 및 통지기한)

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아래에 열거한 신용보증부실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래의 통지기한 내에 신보에게 도달하도록 반드시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순번

5의 경우에는 전화로 통지한 후 지체없이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1	보증부대출의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부실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부실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3	보증부대출의 원금을 1개월 이하의 간격으로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분할상환원금 또는 이자가 약정 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2개월이 경과한 때	부실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부실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5	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채무자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부실사유 발생일의 다음 영업일 이내
6	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채무자가 E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관련인 제외)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부실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부실사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8	채무자가 F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절차가 진행중인 때	부실사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3) 피고 A은 2013. 1. 28. G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21. 1. 17.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이하 위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 A의 대출채무를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 위 대출계약의 내용이 된 여신거래약관(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관'이라 한다) 제7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 재산(제1호의 제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후략)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은행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 등으 ㄹ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후략)

다. 원고의 대위 변제 등

1) 피고 A은 2019. 1. 12. 이 사건 대출채무의 분할상환금 변제를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G은행은 2019. 1. 24. 원고에게 피고 A의 원금연체를 이유로 한 신용보증부실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9. 4. 30. G은행에 16,582,915원을 대위변제하고, 법적조치비용으로 517,862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약금 89,890원이 발생하였다.

라.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 등

1) 피고 A은 ① 2017. 1. 18.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 2018. 1. 23.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2018. 3. 9. 피고 C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 2018. 4. 3.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③ 2018. 3. 9. 피고 D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3증여계약'이라 한다), 2018. 3. 12.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체결 이후 2018. 1. 23.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3,64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1,20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I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합계 17,190,667원(= 대위변제금 16,582,915원 + 법적조치비용 517,862원 + 위약금 89,890원)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는 보증기한 이내에 신용보증부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사실(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8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9. 1. 11.인데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채무의 분할상환금(원금)을 연체한 것은 2019. 1. 1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채무 연체일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기한 이후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G은행에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이 2017. 11. 6. 남대구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그 소유의 굴삭기((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에 대한 압류를 당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일시경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사업장(임차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원고가 피고 A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가 피고 A의 사업장에 대한 압류 결정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피고 A이 2018. 2. 27. 그 소유의 대구 달서구 J 외 1필지 K호(이하 '달서구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남대구세무서로부터 세금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을 받았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이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사유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유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 조항에 따라 피고 A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위와 같은 압류·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선택하여 보더라도, 담보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체납·압류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G은행이 서면으로 피고 A에게 압류 등의 해소를 독촉하고 그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만 비로소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인바(이 사건 여신거래약관 제7조 제3항 제1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달서구 부동산이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재산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는데, G은행이 위 압류·체납처분 무렵 피고 A에 대하여 압류 등의 해소를 독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위 체납·압류처분에 기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기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9. 4. 30. G은행에 이 사건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 나아가 설령 원고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대위변제자로서 피고 A에게 그 대위변제금의 구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G은행에 대위변제를 한 2019. 4. 30. 비로소

성립된 것으로서 피고 A이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2017. 1. 18.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의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A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에 대하여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등기원인일인 2017. 1. 18.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 1. 23. 체결된 것인데, 피고 A은 2017. 11. 6. 또는 2018. 2. 27. 남대구세무서의 압류·체납처분을 받음으로써 그 무렵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부의 추정력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3195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2017. 1. 18. 체결된 것으로 추정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 2018. 1. 23.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 A이 남대구세무서로부터 세금 체납을 이유로 2017. 11. 6.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하여, 2018. 2. 27. 달서구 부동산에 대하여 각 압류·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원고의 사전구상권을 발생시키는 사유로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사유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규정에 따른 통지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각 압류·체납처분을 이유로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설령 원고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대위변제자로서 피고 A에게 그 대위변제금의 구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G은행에 대위변제를 한 2019. 4. 30. 비로소 성립된 것으로서 피고 A이 피고 C, D에게 별지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증여한 2018. 3. 9.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의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A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제2, 3증여계약에 대하여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이 2017. 11. 6. 및 2018. 2. 27. 남대구세무서로부터 각 압류·체납처분을 받음으로써 그 무렵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압류·체납처분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에서 정한 사전구상권을 발생시키는 사유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가람

별지